

별첨. 정관변경 사항(2025년 3월 12일 시행)

현행	개정
제46조(대의원회) ① (생략)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71명(여성대의원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관교·문학 4명 2. 학익 5명(남성3명,여성2명) 3. 남부 6명 4. 남촌 8명 5. 선학 6명 6. 연수1 4명 7. 연수2 3명 8. 청학 5명 9. 동춘 8명 10. 동막 5명 11. 옥련 5명 12. 소암 7명 13. 송도 4명 ④ ~ ⑩ (생략)	제46조(대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관교·문학 4명 2. 학익 5명(남성3명,여성2명) 3. 남부 5명 4. 남촌 9명 5. 선학 6명 6. 연수1 4명 7. 연수2 3명 8. 청학 5명 9. 동춘 8명 10. 동막 5명 11. 옥련 4명 12. 소암 8명 13. 송도 4명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 (생략) 12.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	개정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 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u>(200)만원 이상</u>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u>(4,000)만원 이상</u>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u>(4,000)만원 이상</u>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u>(7)만원 이상</u> ② ~ ③ (생략)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 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u>(210)만원 이상</u>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u>(6,000)만원 이상</u>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u>(5,000)만원 이상</u> <u><삭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2. (생략) 3.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u>(100)만원 이상</u>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선거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선거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u>(105)만원 이상</u>

현행	개정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u>(2,000)만원 이상</u>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u>(2,000)만원 이상</u>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u>(3.5)만원 이상</u> 4. (생략)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u>(3,000)만원 이상</u>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u>(2,500)만원 이상</u> <u><삭제></u> 4.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 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격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생략) <u>2. 가구원수</u> 3. ~ 5. (생략)	제10조(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생략) 2. 가구원수 3.~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일)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동시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65조(선거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동시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생략) ④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제72조(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 ①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선거인명부는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

현행	개정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u>선거일전 11일 까지</u> 열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신설> <신설>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u>3일간</u> 열람할 수 있다. <u>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⑥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⑦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생략) <신설>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제75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위원회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6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제76조(등록무효 등) ① 후보자등록 후에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u>

현행	개정
<u>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u> ② ~ ③ (생략)	<u>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u> <u>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u> <u>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u> <u>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u> <u>4.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u>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u> ② (생략)	제77조의2(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u>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 제77조의11, 제77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u>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선거공보) ① (생략) <u><신설></u>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u>선거공보</u>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u>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제80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
③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u>선거공보</u>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u>선거인</u>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u>경력·학력·학위·상벌</u>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u>제5항</u>에 따라 허위게재 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④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u>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u>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u>후보자 및 선거인</u>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u>경력·학력·학위·상벌·범죄경력</u>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u>제6항</u>에 따라 허위게재 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첨부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7조의4(선거벽보) ① (생략)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u>해당 위탁단체</u>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u>게시판</u>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3 <u>제3항부터 제6항</u>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첨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 (생략)	제77조의4(선거벽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u>조합</u>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u>게시판 및 조합과 협의한 장소</u>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3 <u>제4항부터 제7항</u>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첨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5(어깨띠·윗옷·소품)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제77조의5(어깨띠·윗옷·소품) <u>후보자등</u>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현행	개정
있다.	수 있다.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제77조의6(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생략)	제77조의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8(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77조의9(예비후보자) ① 조합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별표 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

현행	개정
	<u>하여야 한다.</u> ⑤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른 방법 2. 제77조의8에 따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77조의12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u><신 설></u>	제77조의10(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8에

현행	개정
	<u>다른 방법(조합이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77조의5 및 제77조의8에 해당하는 방법 ④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u><신 설></u>	제77조의11(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77조의6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합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밝힌 조합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⑤ 조합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현행	개정
	<u>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77조의 6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u> <u>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u>⑥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u> <u>⑦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조합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u> <u>⑧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u>
<u><신 설></u>	<u>제77조의12(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조합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u> <u>③ 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u>

현행	개정
	<u>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u>
<u>제77조의9</u> (생략)	<u>제77조의13</u> (현행 제77조의9와 같음)
<u>제77조의10</u>(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u>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생략) <u><신설></u> 3. <u>제1호 또는 제2호</u>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u>제3호까지</u>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생략)	<u>제77조의14</u>(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u>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현행과 같음) 3. <u>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u>제4호까지</u>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6. (현행 제5호와 같음)
<u>제77조의11 ~ 제77조의15</u> (생략)	<u>제77조의15 ~ 제77조의19</u> (현행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5까지와 같음)
<u>제77조의16</u> (기부행위의 정의) 이 정관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	<u>제77조의20</u> (기부행위의 정의) 이 정관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

현행	개정
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u>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이나 그 가족 2. (생략)	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u>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 선거권이 있는 자 및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이나 그 가족 2.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7(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u>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 라. (생략)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u>축의·부의금품</u>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u>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u>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략) 3. ~ 4. (생략) <u><신설></u>	제77조의21(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을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u>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u>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u>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u>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u>축의·부의금품</u>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조합의 직무상 행위는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u>

현행	개정
② (생략)	<u>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u> <u>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u> <u>2.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제77조의18(기부행위제한기간)</u>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u>180일</u>부터 선거일까지 2. (생략)	<u>제77조의22(기부행위제한기간)</u>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u>1년</u>부터 선거일까지 2. (현행과 같음)
<u>제77조의19 ~ 제77조의21</u> (생략)	<u>제77조의23 ~ 제77조의25</u> (현행 제77조의19부터 제77조의21까지와 같음)
<u>제79조의2(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u> 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u>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u> ② ~ ⑥ (생략)	<u>제79조의2(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u> 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u>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u> 다만, <u>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8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u>선거인</u>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u>해당 위탁단체</u>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 ⑥ (생략)	제8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u>조합원</u>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u>조합</u>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6조(준용규정) 제69조, 제72조제1항·제3항·제4항,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21까지,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는 “제64조 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2조·제77조의3·제77조의10·제77조의13·제77조의15·제77조의16·제80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77조의2 중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7조의3,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69조, 제7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7조의10(제3항은 제외한다),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25까지,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제4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는 “제64조 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2조·제77조의3·제77조의14·제77조의17·제77조의19·제77조의20·제80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77조의2 중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7조의3,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8조의2(선거운동) ① ~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u>사위의</u>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⑥ ~ ⑧ (생략)	제98조의2(선거운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u>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 ~ ② (생략)	제105조(당선인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③ <u>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성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u> ④ (생략)	③ <u>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전체조합원 또는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제101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이사를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07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7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5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2. (생략)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제108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다른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감사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

현행	개정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 5. (생략)	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 5. (현행과 같음)
제118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단기명예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8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78조, 제82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단기명예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5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항·제5항, 제76조, 제78조제2항, 제98조의2제2항·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5항·제6항,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78조제2항, 제98조의2제2항·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제74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5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현행	개정																																																																								
<별표> 구비서류 일람표 <table><tr><th>구분</th><th>부수</th><th>발급자</th></tr><tr><td>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td><td>1부</td><td>본인</td></tr><tr><td>2. 출자금원장 사본</td><td>1부</td><td>조합장</td></tr><tr><td>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td><td>1부</td><td>채권보유 사무소장</td></tr><tr><td>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td><td>1부</td><td>조합장</td></tr><tr><td>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td><td>1부</td><td>조합장</td></tr><tr><td>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td><td>1부</td><td>본인</td></tr><tr><td>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able> (주) 1. 구비서류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함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구분	부수	발급자	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본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부	조합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채권보유 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조합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조합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본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별표> 구비서류 일람표 <table><tr><th>구분</th><th>부수</th><th>발급자</th></tr><tr><td>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td><td>1부</td><td>본인</td></tr><tr><td>2. 출자금원장 사본</td><td>1부</td><td>조합장</td></tr><tr><td>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td><td>1부</td><td>채권보유 사무소장</td></tr><tr><td>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td><td>1부</td><td>조합장</td></tr><tr><td>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td><td>1부</td><td>조합장</td></tr><tr><td>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r><td>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td><td>1부</td><td>본인</td></tr><tr><td>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td><td>1부</td><td>해당기관장</td></tr></table> (주) 1. 구비서류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함 2.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함	구분	부수	발급자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본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부	조합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채권보유 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조합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조합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본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구분	부수	발급자																																																																							
1.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본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부	조합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채권보유 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조합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조합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본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구분	부수	발급자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본인																																																																							
2. 출자금원장 사본	1부	조합장																																																																							
3.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채권보유 사무소장																																																																							
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5. 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6. 사업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1부	조합장																																																																							
7. 비경업관계사실 확인서	1부	조합장																																																																							
8.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기관장																																																																							
9.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부	해당기관장																																																																							
10. 공명선거실천 서약서	1부	본인																																																																							
11.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해당기관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